

『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복자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출산가정과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(50퍼센트) 조항 추가(안 제4조의 2)
 -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
 -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임신부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출산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